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97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 김소희 · 김상훈 · 김위상

성일종・최수진・우재준

김성원 · 김예지 · 김선교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위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외에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인터넷 도박의 경우 시스템 조작을 통하여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지 않고 참여자가 재산상 이익을 득할 확률을 0으로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행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박자금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행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 1)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 이체하는 행위
 - 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 행행위를 가장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2호가목"을 "제2조제2호가목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2호다목"을 "제2조제2호가목3)·4)"로, "라목에"를 "나목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 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 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 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 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 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 한 행위는 포함한다.
 -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 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 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

1. (현행과 같음)

개

-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기통신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한 행위 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 (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 되, 대출의 제공・알선・중 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 한다.
 - 1)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 록 하는 행위
 -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

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 7. (생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 전 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 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 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위

- 3)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 부하도록 하는 행위
-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 금하도록 하는 행위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행행위를 가장 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타인에 게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 7. (현행과 같음)

세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u>제</u>
2조제2호가목1) · 2)
②

② -----

제2조제2호다목 또는 <u>라</u>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u>제2조제2호가목3) · 4)</u> <u>나</u>
목에
③ ~ ⑤ (현행과 같음)